

속초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5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사 유

-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및 가구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자금의 융자지원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임.

2 주 요 글 자

- 융자지원 한도액 확대 (안 제4조 참조)

" 마을당 1 천만원 이상 1 억원 범위내" 를 "마을당 1 천만원 이상 1 억원, 가구당 5 백만원 범위내" 로 개정

3. 참 고 사 항

- 강원 법규 02124 ~ 98 ('93.3.24) 호로 정비안 시달 ————— 별 청
- 입 법 예 고 ————— '93. 4. 8 ~ '93. 4. 28
- 시정조정위원회 부의 ————— '93. 4. 29

속초시 조례 제 10

속초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

속초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마을당 : 천만원이상 : 억원 범위내로' 를 '마을당 : 천만원 이상 : 억원, 가구당 5 백만원 범위내로'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新,舊 條文 對備表

現 行	改 定 案
제 4조(융자한도 및 이율)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 트 한다. 다만 도시지역은 통당 1억원 범위내로 한다	제 4조(융자한도 및 이율) ① ----- ----- 1천만원이상 1억원,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한다. -----
② 생략	②(현행과 같음)